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방 위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2.3. 공포, 5.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 1)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
- 2)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

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사유 확대(안 제27조)

- 1) 시범획득 사업 등을 통해 군 내 활용성이 확인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일반 획득절차와는 차별화된 절차 적용 필요성 대두
- 2) 또한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반면,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성 내재

- 3)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중복된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다.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성 강화(안 제71조)

- 1)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는 우주환경의 특수성 고려 시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 2) 이에,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형상 관리에 관한 기술 지원 업무와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마련
- 3) 다만, 기관의 기술 역량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27조제8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투용 적함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5. 신기술의 시범적용과 연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제71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형상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함정무기체계”를 “함정무기체계 및 제2조제9호에 따른 우주무기체계”로 한다.

나.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 설></u> <u><신 설></u> ⑨ (생략) 제71조(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u>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u>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u> <u>5. 신기술의 시범적용과 연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u> ⑨ (현행과 같음) 제71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삭 제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의 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생략)

<신 설>

나. (생략)

3.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생략)

<신 설>

나. (생략)

다. 무기체계(제2조제4호에 따른 함정무기체계는 제외한다) 연구개발사업 품질보증 기술지원

라. ~ 바. (생략)

-----.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형상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 (현행 나목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

- 함정무기체계 및 제2조제9호에 따른 우주무기체계----

마. ~ 사. (현행 라목부터 바목

4. ~ 8. (생략)	까지와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13